

#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제정 2019·4·11 조례 제1482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에 이천시 관내에서 펼쳐진 3.1운동을 비롯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이천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일제강점기에 이천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이하 “항일독립운동”이라 한다)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①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2. 항일독립운동의 추모사업, 기념사업
3.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운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4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6조

제3항,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 「이천시 향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